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61-4205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부서장: 고정은 실장 담당자: 조안나 과장 e-mail: ancho12@kcia.or.kr

직인생략

대화협: 제8-341호

시행일자: 2026.8.19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6030호(2026.8.18.) 관련입니다.

3.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자외선차단제의 표시·광고 표현에 대해 인체시험 또는 인체외 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(SPF 등)를 표시·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[붙임 1]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4.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9월 11일(금)까지 우리 협회(이메일 : ancho12@kcia.or.kr, 02-761-4205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: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1부.

붙임2: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